

租稅關係法制 整備의 現況과 展望

- 企業構造調整稅制를 中心으로 -

金 喆 權*

차 례

- I. 序 論
- II. 企業構造調整과 租稅
 1. 企業구조조정의 의의
 2. 企業구조조정세제의 기본원칙
 - (1)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일반화
 - (2) 기업체질의 강화
 - (3) 과세의 형평성 유지
 3. 조세법령개정의 경과
- III. 企業構造調整稅制의 主要內容
 1. 총 설
 2.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
 - (1) 기업형태의 변경
 - (2) 사업내용의 조정
 - (3) 재무구조의 개선
 3. 금융기관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구축세제
 - (1)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 (2) 금융시스템구축에 대한 세제
- IV. 앞으로의 改善方向
 1. 사후관리강화
 2. 과세형평성의 제고
 3. 적대적 기업인수관련 세제의 정비
 4. 구조조정법제의 독립화

* 稅務大學 內國稅學科 專任講師, 法學博士

I. 序 論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1997년 11월 이후의 IMF체제 하에서 신문,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구조조정이라는 용어였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각 분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행하여졌다. 구조조정이란 정부, 공공기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작년의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거쳐 최근 제2차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었다. 공공기관 특히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의 실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구조조정도 진행중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있는 기업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조세지원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현되는 수익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의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세중립성이 유지되거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미실현이익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현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다. 둘째로는 인수합병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제상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로는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M&A)와 관련하여 세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¹⁾ 넷째로는 기업구조조정 특히

1) 미연방세법(IRC)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하여 조세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메일(greenmail: 적대적 기업인수를 행하는 자가 가진 주식을 그 주식발행회사가 거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되사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다.)이 있는데, 그린메일로 인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비용공제를 부정하며, 그것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IRC 제162조, 제5881조). 그린메일의 과세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철권,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조세문제”,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118면이하 참조.

기업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이나 분할되기 이전의 기업의 세무적 특성을 합병이나 분할이 일어난 이후에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결국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문제의 핵심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를 볼 수 있다.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회사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 내용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상 사업목적의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존의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자산을 실질적인 감소없이 다른 목적의 사업에 쉽게 전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기업활동기간 중에 축적된 이익이 기업의 형태나 사업목적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보전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계기(taxable event)로 삼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 이처럼 과세의 부담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변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국제경제력면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한다.³⁾

다음으로 과세를 긍정하는 견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⁴⁾

생각컨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세혜택(과세이연)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중립성과 공평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조세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은 과세 제외되는 조직개편(tax-free reorganization)의 유형을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과세이연한다(IRC 제368조). 독일의 경우에는 단행법률인 조직개편법(Umwandlungsgesetz)과 조직개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세혜택을 주고있다.⁵⁾

2) 한만수,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과세제도의 개선방향”, 『조세법연구』[II], 세법연구회편, 세경사, 1996, 277면.

3) 한만수, 상계논문, 277면.

4) 이창희, “기업구조조정과 미실현이익과세”, 『조세법연구』[IV], 세경사, 1998, 168~182면.

5) 독일 조직개편세법의 전반적인 고찰은 한만수, “독일사업재편조세법 제도의 고찰”, 『조세

우리의 경우에도 IMF체제 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일부는 과세의 공평성을 위하여 기존에 부여 하던 조세혜택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된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1998년말까지 이루어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개정 경과 및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언급하기로 한다.

II. 企業構造調整과 租稅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Umwandlung)이라 함은 기업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조직개편,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이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⁶⁾ 기업구조조정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강학상의 용어이다. 그리고 그 용어의 사용자마다 개념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구조개혁, 조직개편, 조직변경,⁷⁾ 사업재편 등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유형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금융시스템의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성질에 따라 조직개편(합병, 분할, 법인전환, 통합, 조직변경), 사업조정(기업양도, 사업양도, 자산교환, 사업전환), 재무구조개선(부채상환, 자산매각, 기업주재산출연, 증자),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로 나눌 수 있다.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는 자율적 구조조정과 타율적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구조조정은 원칙적으

법연구』[IV], 세법연구회편, 세경사, 1998, 228면 이하 참조.

6) 장태평, 『기업구조조정과 세계지원』, 광고아카데미, 1998, 3면.

7) 통상 조직변경이라는 용어는 기업구조조정과 유사한 개념 내지는 기업구조조정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직변경이라는 용어를 합병, 분할, 통합 등의 상위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상법상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 즉 합병회사를 합자회사, 합자회사를 합병회사로, 주식회사를 유한회사,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제607조).

로 기업자율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제지원여부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구조조정과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구조조정은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조세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세제상의 지원 측면만 강조한다면 조세중립성을 해하게 되고, 무역거래의 자유화를 위한 WTO체제 하에서 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비치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조세중립성의 확보와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작년의 개정된 관련 세법령이 이러한 점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면관계상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하고, IMF체제 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세법령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조감하는 것에 한정하기로 한다.

2. 기업구조조정세제의 기본원칙⁸⁾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세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 하에 이를 추진하였다.

(1)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일반화

과거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는 산업합리화제도⁹⁾와 같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개별기업이나 개별업종에 대하여 각종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WTO체제 하에서 이러한 방식은 더이상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과 운영방식을 일반화하고 조세혜택도 영구적인 조세감면이 아니라 한시적인 감면의 일 형태인 과세이연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여 조세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산업합리화제도는 망한 기업에 대하여 사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8) 이에 대하여는 장태평, 전게서, 9면 이하 참조.

9) 산업합리화제도라 함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수출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일정한 기준(합리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정비되면서 현재는 없어졌다(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9조).

의 구조조정세제는 사전적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세제를 일반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체질의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제지원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세제지원의 과실이 기업내부에 축적되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단순히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거나 기업의 부가 기업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세의 형평성 유지

구조조정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아울러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 희석되거나 부실경영의 결과가 지원대상이 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의 지원 이후에도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세제의 방식도 완전한 조세감면이 아니라 과세이연방식을 택함으로써 형평성문제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3. 조세법령개정의 경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의 내용중 일부는 IMF체제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나 IMF체제를 계기로 하여 완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산재평가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¹⁰⁾ 그중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자산재평가법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각 세법의 개정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은 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왔고,

10) 98년 개정세법에 대하여 전반적,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우창록/김동수, “98년 개정세법의 개관”, 『인권과 정의』 제272호, 22면 이하 참조.

그 적용시한이 98년 12월말로 만료되므로 차제에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의 내용을 한군데로 통합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면개정되었다(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 그 주요내용을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을 영구법화 하고 조세지원조항별로 일몰기한을 도입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법도 전면개정(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1호)되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세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업분할과 관련된 세제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업의 합병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처리기준을 재정비하고 세제를 간소화하였다. 즉 법인의 소득계산상 비용판정과 관련된 일반조항을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신설하였다.

자산재평가법은 1998년의 개정(1998년 4월 10일 법률 제5531호)을 통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되며, 그 동안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토지 및 비업무용부동산도 재평가하도록 허용하고 관련제도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Ⅲ. 企業構造調整稅制의 主要內容

1. 총 설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각 단행세법별로 나누어 설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의 법적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그러한 법적 형태의 변경과 관련되어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이다. 둘째, 법적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즉 기업자체를 양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행해지는 각종의 행위에 따른 과세문제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세제는 금융기관이 일반 법인으로서 가지는 내용인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가 그대로 타당하고 특별히 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세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것은 금융기관자체의 구조조정세제와 금융시스템의 구축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의 핵심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과세이연이며, 금융기관 구조조정세제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부족분의 손금인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들에 대한 특별지원이다.

2.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

(1) 기업형태의 변경

1) 기업합병

가. 의 의

합병이라 함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되고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1997년 12월 13일의 법인세법 개정 이전에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바로 과세되었으나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었고, 1998년 12월 28일의 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과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것은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이러한 지원세제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주요내용

합병에 따른 과세문제는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발생한다.

피합병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법인세)과세와 자산이전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가 문제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가로 발행되는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

에 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인 한 청산소득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4조제1항제2호). 일정한 요건은 i)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ii) 합병대가중 주식가액이 95%이상일 것, iii)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44조제1항). 아울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자산이전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이월과세¹¹⁾ 또는 과세이연¹²⁾된다(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0항).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승계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문제,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문제,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가 발생한다. 승계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되며, 등록세는 면제된다(조특법 제119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116조제1항, 지방세법 제110조).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차익은 과세이연된다. 즉 이러한 평가차익은 손금산입한 후 추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되게 된다.¹³⁾ 1998년말 개정 이전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요건은 위에서 설명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서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에 장부가액으로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

11)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러한 양도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을 양도시점에서 양도자 개인이나 양도법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이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제2조제1항제6호).

12) 과세이연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대체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제2조제1항제7호).

13) 예컨대 A기업이 B기업을 흡수합병 하면서 건물의 평가증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차익이 아래 자료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과세이연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 건물의 장부가액 10억(건물의 평가증 2억포함), 합병차익 2억>

가) 합병시의 분개

건물 2억 / 합병차익 2억

나) 위의 합병차익 2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다.

일시상각손 2억 / 일시상각충당금 2억

다) 사업연도말에 위 건물을 감가상각시(건물장부가액 10억,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으로 상각할 경우)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부분(2억×0.05)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한다.

감가상각비 5천만 / 감가상각비누계액 5천만

일시상각충당금 1천만 / 감가상각비 1천만

병법인주식총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승계된 사업과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계된 이월결손금은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하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라 한다. 이른바 역합병(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¹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문제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인 한 이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와 동일하게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므로 의제배당이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합병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다툼이 있었던 것을 1998년말 개정으로 명확히 한 부분도 있다. 피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후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1998년말 개정 이전에는 의제배당과세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의제배당과세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법인세법 제16조제2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즉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이 합병을 계기로 합병차익이 됨으로써 자본준비금화하고(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 이러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은 개정 전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과세에서 제외되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2) 기업분할

가. 의 의

기업분할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상법상의 회사분할을 의미한다. 상법상의 회사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를 의미한다(상법 제530조의2). 기업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작년 상법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사실상 기업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예컨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 영업양도,

14) 역합병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역합병은 허용되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역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1조제4항).

사업양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조세문제의 핵심은 기업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하는 문제이다. 미연방 세법(IRC)은 우리의 기업분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과세 제외되는 조직개편(tax-free reorganization)이라는 제목하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의 설립은 상법상 회사분할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회사분할의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의 현물출자를 행하고 그로인해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한다(조특법 제38조). 자회사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20조제1항). 1998년말 조특법이 전면개정되기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그러한 요건을 삭제하였다.

협회의 기업분할 즉 상법상 회사분할은 그 분할 유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분할 유형에 따라 조세상 취급에 차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상법과 세법이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분할의 조세문제는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그리고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단계에서 발생한다.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동일한 차원에서 세법이 다루고 있다.

분할법인의 조세문제는 우선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과세문제가 일어난다. 일정한 요건¹⁵⁾을 충족시 합병과 동일하게 청산소득과세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81조, 제123조,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문제로 된다. 법인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과세 제외되고,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된다(법인세법 제99조제11항). 물적분할¹⁶⁾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15) 일정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법인세법 제46조제1항).

- i)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일 것
- ii)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받는 분할대가가 전액주식이어야 하며, 그 주식이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iii)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6) 物的分割이라 함은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530조의12). 즉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과세이연되고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된다.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조세문제는 분할로 인해 발생한 분할평가차익과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과세문제이다. 분할평가차익은 일정한 요건구비시 합병과 동일하게 과세이연된다(법인세법 제46조).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된다. 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입장에서는 의제배당과세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분할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의제배당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기업통합

가. 의 의

기업통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자산의 양도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법인에 흡수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합병과 다른점은 자산의 승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인간의 일반적인 합병과 그 효과면에서 유사하므로 법인간의 합병에 비추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97년 12월 13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14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통합에만 조세혜택을 주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감면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다만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 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에 법인기업으로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하고(조특법 제31조제1항), 통합법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분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을 人的分割이라 한다.

- i) 통합법인이 설립후 1년이 경과된 법인일 것
- ii)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 될 것
- iii)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4) 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식적인 변경으로서 자산이 처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과세이연의 요건은 i) 제조업, 광업, 건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ii)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이다.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물출자 자산 또는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조특법 제12조제1항), 세액감면사항 등이 전환법인에 승계된다(조특법 제32조제4항).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전액면제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50%가 감면된다(조특법 제119조제1항, 제3항, 제120조제1항, 제3항).

(2) 사업내용의 조정

1) 기업양도 및 청산을 위한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가. 의 의

기업집단(이른바 ‘재벌그룹’)이 부실계열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채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열기업의 부채를 인수·변제하여 정상화한 후 양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여 변제하더라도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채문제의 해결에 난점이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부채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양수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부채를 인수·변제할 경우 예외적으로 조세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나. 주요내용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인 보증채무인수·변제법인은 당해 보증채무의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39조제2항). 다만 인수한도금액은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주주가 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채무가 감소한 양도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감소액은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년 거치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39조제3항). 양도대상법인에는 모든 내국법인이 포함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으로는 주권상장법인 등만 인정되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양도대상법인을 인수한 주주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주주가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인 경우 타법인 주식취득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나 그 예외를 인정한다(조특법 제135조제1항제1호).

2)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를 통한 업종 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한계사업정리 등을 위하여 다른 기업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양수기업의 취득세,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자산매각의 지원과 동일하므로 후술하는 중복자산의 매각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자산교환

기업이 사업을 고도화, 전문화하거나 지역적 이유로 타기업의 사업자산과 맞교환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자산의 양도 거래로 인식하여 양도차익과 관련된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교환된 자산을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기업의 계속성이라는 차원에서 과세상의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이 제도는 이른바 빅딜(Big Deal)에도 활용될 수 있다.¹⁷⁾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교환의 경우에는 자산교환차익에 대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한다(법인세법 제50조). 과세이연된 법인세는 매각하거나 감가상각시점에서 익금산입을 통하여 과세되고, 특별부가세는 매각시에 과세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86조제5항). i) 자산교환법인의 자산이 모두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17) 이른바 빅딜은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며 실무상 5대 재벌그룹의 사업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활용가능하다.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ii) 동일한 종류의 자산과 교환되어야 하며, 교환된 자산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iii) 자산교환법인간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4)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은 창업이나 벤처기업의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업종의 제한 및 신고절차 등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였으나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중소기업이 현재 수행하는 사업에서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에 대한 조세와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즉 i) 전환전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자가 전환전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규로 전환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영위하고, ii) 전환사업은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33조제1항).

5) 기업교환

기업교환이라 함은 2이상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특정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사업영역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지배주주들이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되고,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조특법 제46조). i)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업교환계획이 이루어 질 것, ii)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양도할 것, iii) 지배주주 내부에서 각 주주간의 상대적인 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 iv) 참여하는 기업집단소속의 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3) 재무구조의 개선

1) 기업자산매각

가. 의 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자산매각에 대하여 현행 조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i) 중소기업자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조특법 제36조)
- ii)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산매각(조특법 제37조)
- iii) 구조조정에 따른 중복자산의 매각(조특법 제42조)
- iv)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의한 당해부동산의 양도(조특법 제43조)

조세특례제한법은 위의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i) 조특법 제36조의 자산매각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한다. 그 요건으로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중소기업협회의 승인 등이 불필요하고 특별한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이 행하는 부채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 차이가 있다.

ii) 조특법 제37조의 자산매각

재무구조개선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그 요건으로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제외)으로서, 금융기관협회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iii) 조특법 제42조의 자산매각

기업이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구조조정이후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매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위에서 설명한 2가지의 자산매각이 그 매각대금을 부

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이 제도는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면 된다는 점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제한이 완화되어 있다.

iv) 조특법 제43조의 자산매각

기업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함은 중소기업자의 부채상환을 위한 매각부동산(조특법 제36조),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매각부동산(조특법 제37조), 개인주주 등이 법인에 증여하기 위한 매각부동산(조특법 제40조), 법인이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매각부동산(조특법 제41조), 인수·합병·사업양수도시 매각부동산(조특법 제42조)을 말한다.

2) 기업주의 재산출연

부실해진 기업을 건실화 하기 위하여 개인주주가 그 재산을 대가없이 기업에 증여하거나, 개인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법인에 대하여는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한다(조특법 제40조, 제41조). 그 요건으로는 i) 당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자구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ii) 자산양도후 3월 이내에 증여할 것, iii) 수증법인은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일 것(단, 3년 이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은 제외), iv) 재산출연하는 주주가 거주자일 것이다. 수증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 그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차후 수증자산을 매각시 특별부가세도 면제한다.

3) 채무면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의 일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데 그 경우 현행세법상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익금산입은 구조조정의 장애를 가져오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한다(조특법 제44조). 그 조

건으로는 i)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이나 화의인가를 받고, 그 결정에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ii) 금융기관과 기업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iii) 완화된 금융조건에 따라 환산된 현재가치로 상환하고 그 차액을 면제받을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면제법인이 받은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면제금액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5) 기업개선작업(Workout)

가. 의 의

기업개선작업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개선작업에는 기업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거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이자감면·채무면제 등을 포함하는 부채구조조정과, 감자·자산매각·한계계열사 정리 및 상호지급보증해소·외자유치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한다.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제상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 지원요건으로는 i)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승인한 기업개선계획제출, ii) 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워크아웃기업 입장에서는 그 채무면제를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3년 거치후 3년에 걸쳐 균등액 이상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제45조). 그리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감자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그러한 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불균등감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도 배제한다(조특법 제45조제6항).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무감면액 전액을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고,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조특법 제120조제5항제4호).

3. 금융기관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구축세제

(1)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세제가 그대로 적용

되면서 아울러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세법상 금융기관과 관련된 구조조정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i)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정리와 관련된 세제
- ii)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세제
- iii)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와 관련된 세제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아울러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조세특례가 인정된다(조특법 제48조).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소멸금융기관의 청산소득과 소멸금융기관의 주주가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조특법 제49조). 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조특법 제50조).

그리고 특별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된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인수(P&A)함에 있어 자산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출연금으로 보전하여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보전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조특법 제5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전액면제한다(조특법 제51조제1항).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부동산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당해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는 50%감면된다(조특법 제51조제2항).

(2) 금융시스템구축에 대한 세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일반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최근에 도입되었으며 그 각각에 대하여 조세 지원을 하고 있다.

1)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증권투자회사라 함은 유가증권투자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52조). 증권투자회사가 적용받는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고,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한다(조특법 제117조제1항제10호).

아울러 증권투자회사의 특수한 경우로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여러 정책목적을 수행하도록 의무사항이 추가되어 있거나 기업가치상승을 위한 각종사업을 할 수 있다. 이들 회사도 증권투자회사와 같은 소득공제 등이 인정되며, 아울러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또는 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조특법 제54조, 제55조). 그리고 이 회사에 출자한 출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2)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라 함은 자산보유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 부동산 기타재산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산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이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여야 하며, 통상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존재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시 그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한다(조특법 제56조).

IV. 앞으로의 改善方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체제를 계기로 하여 기업구조조정이 현안의 과제가 되었고 이를 조세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도나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조세지원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의 이러한 구조조정세제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완결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규정이 중복되어 있는 감이 있고 구체적인 입법취지를 세법령조항만으로 판단하기에 힘든 경우도 보인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제도들에서 나타난 점들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구조조정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기로 한다.

1. 사후관리강화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는 해당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혜적인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세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기업에 대한 조세특혜는 국가전체로 본다면 세수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족된 세수는 다른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조조정에 편승한 조세회피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2. 과세형평성의 제고

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은 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형평성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조세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취하는 방식은 영구적인 조세감면이 아니라 과세이연(또는 이월과세)을 하는 쪽이어야 한다. 현행 세법령도 이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여전히 조세감면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바,¹⁸⁾ 이를 과세이연 방식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위주로 되어 있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⁹⁾

3. 적대적 기업인수관련 세제의 정비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호적 기업인수(friendly M&A)에 대한 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M&A)와 관련된 세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은 시각을 넓혀 본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의한 우리 기업시장에의 참여도 포함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참여는 우리의 구조조정에 순기능적인 측면

18) 예컨대 현행 조특법 제42조는 기업이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이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상환을 제외하고 사업용부동산을 대체취득시에는 과세이연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9) 참고로 99년 5월 24일 조특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제5장에 신설하였다.

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외국기업에 의한 내국기업의 인수에 대하여 내국기업이 방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행위와 관련된 조세조항의 신설을 의미한다. 예컨대 그린메일(greenmail)에 대한 과세 문제나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대한 세법상 명문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²⁰⁾

4. 구조조정법제의 독립화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세제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산재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조직개편법(Umwandlungsgesetz)과 조직개편세법(Umwandlungssteuergesetz)이라는 단행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 세법(IRC)에 과세 제외되는 조직개편(tax-free reorganization)이라는 편을 만들어 조직개편의 유형과 세제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조조정관련 조세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규정은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고,²¹⁾ 그 입법취지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규정도 보인다.²²⁾ 그리고 세법이 타법령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조세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용어사용은 차용된 법령의 용어 사용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행 세법은 독자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²³⁾ 이로 인해 규정자체의 이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 이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철권, 전제논문, 참조.

21)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양수도, 자산교환, 기업교환 등은 서로 유사하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2) 예컨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의 괄호에 새로이 들어간 합병평가차익 관련 조항들은 당해조항만으로 전체적, 체계적인 입법취지와 내용을 판단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예컨대 분할과 관련하여 상법은 분할되는 회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분할후 존속하는 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상법 제11절), 법인세법은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법인세법 제46조). 상법이 정비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함에 비해 세법은 보다 정비된 용어를 사용하는 감을 주지만, 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